##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40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이춘석·한병도·윤준병

장철민 · 김윤덕 · 정준호

정동영 • 이연희 • 임미애

이원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9.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u>료기관</u>
<u>&lt;신 설&gt;</u>	9.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
	<u>른 약국</u>
<u>8.</u> (생 략)	<u>10.</u> (현행 제8호와 같음)